

금융회사 사외이사 후보의 옥석을 가리는,

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기준 100% 활용 가이드

송민경 연구위원
mksong@cgs.or.kr

요약

- ◆ “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기준”에 따라 금융사들이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가 모범기준의 취지를 살려 사외이사 후보의 적격성을 판단할 때 유의할 사항을 정리
- ◆ 모범기준은 금융회사가 특정 배경·직업군·이해관계에 편중되지 않게 다양성·전문성·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“사외이사 후보 추천 내역” 등 공시를 대폭 강화했으므로 주주들은 이를 충분히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
- ◆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면 사외이사 후보자의 적격성 판단에 도움이 될 것
 1. 사외이사 후보는 모두 개별 안건으로 상정되었는가
 2. 소집공고에 ① “내역”의 별도 공시 사실, ② “내역” 확인 방법이 기재되었는가
 3. (“내역” 상) 후보 추천자는 누구인가
 4. (“내역” 상) 추천자와 후보자 간 관계는 신뢰성 있게 기재되었는가
 5. (“내역” 상) 후보자의 전문성·다양성에 관한 설명은 충분한가

금융회사 사외이사 후보의 옥석을 가리는

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100% 활용 가이드

① 모범규준 상 사외이사 관련 규정의 주요내용과 의의

- 2014년 12월에 시행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는 이사회에 권한과 책임을 명시하고, 이를 뒷받침하도록 이사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마련

 - 특히, 금융회사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최고경영자와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각종 세부사항을 상세히 규정

- 모범규준은 금융회사가 특정한 배경·직업군·이해관계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

 - 이사는 개인적으로 전문성을 보유할 뿐 아니라 이사회가 전체로서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추는 데 기여할 필요

- 모범규준은 사외이사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독립성·전문성·다양성 등을 갖추도록 추천 절차·자격·공시·평가 등에 관한 세부조항을 규정

 - (추천 절차) 금융회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금융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 과반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, 공정하며 투명한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되 주주·이해관계자·외부전문기관의 추천을 적극 활용할 필요
 - ▶ 기존 “사외이사 모범규준”과 달리
 - ① 사추위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조하고,
 - ② 주주·이해관계자·외부전문기관의 추천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
 - (자격 요건) 역량의 전문성과 다양성, 독립성과 직무 수행의 공정성, 윤리의식과 책임성,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는 직무 충실성을 갖추 필요

- ▶ 기존 “사외이사 모범규준”과 달리
 - ① 교수·변호사 등 특정 자격과 실무경험 기간을 나열하는 대신
 - ② 전문성·독립성·윤리성·책임성·충실성 등 질적 요소를 강조
- (공시) 사추위에서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에 관해서는 모범규준이 정하는 상세한 내역을 공시해야 함
 - ▶ 기존 “사외이사 모범규준”과 차이점은 후술
- (평가) 매년 공정한 사외이사 내부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되, 2년 이상 재임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외부평가 시행을 권고
 - ▶ 기존 “사외이사 모범규준”과 달리
 - ①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 시행을 권고하고,
 - ② 지배구조 연차보고서, 주총 등에서 평가 결과를 공시·보고해야 함
- 모범규준의 특징 중 하나는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시장 검증, 주주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후보 추천에 관한 공시를 대폭 강화한 점
 - 지배구조에 관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주주총회 3주 전 공시해 주주가 의결권 행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함
 - ▶ 지금까지는 지배구조에 관한 세부내용이 담긴 사업보고서가 주총 이후에 공시되었기 때문에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를 위해 참고하기가 불가능
 - 사외이사 후보 추천과 관련한 공시 사항을 대폭 확대
 - ▶ 기존 사외이사 모범규준과 달리 사외이사 후보의 전문성에 관한 질적 설명, 후보 평가결과와 검토보고서 등을 추가 공개하도록 규정
 - 소집공고 시에 후보 추천에 관한 별도의 상세한 공시사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, 해당 공시의 확인 방법을 기재하도록 함
 - 기존 사외이사 모범규준에서 상기 기재를 규정하지 않아 소집공고 이외에 사외이사 후보를 검증할 상세한 별도 공시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주주가 인지할 수 없었던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

■ “사외이사 후보 추천 내역”(이하 “내역”)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

- (추천 절차 공정성) 추천 절차,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명단·약력, 후보 제안자, 제안자와 후보자 간 관계의 상세 내역
- (후보자 적격성) 후보자의 상세 경력, 독립성과 전문성 요건 충족 여부와 근거, 추천 사유, 후보자 평가결과 및 검토보고서
 - 전문성은 ① 실무경험·전문지식, ② 공정한 직무 수행, ③ 윤리의식과 책임성, ④ 충분한 시간·노력 투입 여부로 구분해 상세 기재
- ▶ “내역”은 소집공고 기재사항보다 훨씬 상세하며, 지난 주총에서의 후보 추천 내역을 기재하는 연차보고서에도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므로 ‘개최 예정’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
- “내역”은 주주의 의결권 행사 지원이라는 모범규준 취지에 따라 주요 사항의 누락이 없어야 하고, 내용 공개가 세부적이며 질적으로 충실할 필요

■ 사외이사 후보 각각을 별도의 주총 안건으로 상정해 주주의 후보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명시

- ▶ 여러 후보를 한 건의 묶음 안건으로 상정하는 경우 반대 후보가 있어도 주주가 불가피하게 전체 후보에 찬성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

② 사외이사 선임 안건 따져 보기

- 금융회사 주총에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상정된 경우 모범규준 상 사외이사 관련 규정의 취지를 감안해 주주가 꼼꼼히 검토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

▶ 사외이사 후보는 모두 개별 안건으로 상정되었는가

- 주주의 사외이사 후보 선택권을 보장할 목적으로 모범규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 가능

▶ 소집통지·공고에 다음 사항을 기재했는가: ① “내역”을 별도 공시한 사실, ② 해당 “내역”이 공개된 인터넷 주소 등 확인 방법

- 금융회사가 주주에게 소집통지·공고에 기재한 내용 외에 더 자세한 사항을 공시했음을 자발적으로 알리고, 해당 공시가 기재된 인터넷 주소를 기재하는 등 구체적인 확인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지를 확인 가능

- 해당 기재가 없는 경우 소집공고만으로는 투자자 대부분이 “내역” 공시의 존재조차 인지하기 곤란해 정보 접근성 제약이 심각

▶ (“내역” 상) 후보 추천자는 누구인가

- 모범규준은 “내역” 상에 ‘실질적’ 추천자를 기재하도록 규정

- 실질적 추천자가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 등인지 아닌지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공정성과 후보자의 독립성에 대한 판단에는 매우 큰 차이 야기

- 가령 사외이사의 주된 감시 대상인 대표이사가 추천자인 경우 피감시자가 감시자인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이해상충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

▶ (“내역” 상) 추천자와 후보자 간 관계는 신뢰성 있게 기재되었는가

- 모범규준은 추천자-후보자 간 관계로 ① 민법상 친족관계, ② 고등학교 이상 교우관계, ③ 동일 기업집단 내 근무한 직장관계를 기재할 것을 요구

■ 가령, 친족관계나 동일 계열 직장 근무 여부 등 세부기준 명시 없이 포괄적으로 “무관” 같은 모호한 방식으로 기재하거나 기재가 아예 없는 경우에는

- 추천자가 객관적 관점에서 후보자를 추천했는지에 관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으므로 **책임의 명확성, 추천 절차의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저해**

▶ (“내역” 상) 후보자의 전문성·다양성에 관한 설명은 충분한가

■ 이사회는 모범규준 취지에 따라 주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후보자의 전문성·다양성에 관한 자체 판단을 “내역”에 상세히 기재할 필요

- 개인적인 전문성과 함께 **해당 후보 선임이 전체로서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에 어떻게 기여 가능한지를 설명**

■ 선진 금융사는 재무, 금융, 리더십, 국제, 위험관리, 법률, 사업관리, 마케팅 등 이사회가 필수로 갖춰야 할 전문성 요소를 미리 규정하고, 이들 요소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사를 선임

■ 예컨대, **다음과 같은 방식의 설명은** 후보자의 전문성·다양성에 관한 충분한 설명으로 보기 어려워 **모범규준의 취지에 역행**

- 후보가 선임되면 전체 이사 중 공직, 교수 등 특정 직역 이사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어 다양성 측면에서 의심의 여지가 있지만 설명이 없는 경우
- “변호사”, “박사”, “교수” 등 직역에 관한 언급뿐인 경우
- 언론, 정계 출신 등 보편적 관점에서 금융사 이사로서 전문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후보자에 관해 별도의 상세한 설명이 없는 경우